

2020. 04 제160호 (20-05)

[코로나19 점검과 향후대응1]

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 현황 및 과제

김 태 연 정책연구실 초빙연구위원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감염병 대응 현황
3.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
4. 시사점 및 향후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슈분석」제160호 (20-05)

발행인 정정옥

발행일 2020년 4월 24일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인 쇄 디자인펌킨 031)893-8316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음.

※「이슈분석」은 가족여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되며, 연구원 홈페이지(www.gfwri.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22)

요 약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영유아의 단체보육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해짐**
 - 영유아는 그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우며, 면역력이 약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에 의한 예방과 주의가 필요함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 등에 규정된 감염병 대응원칙에 따르며,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진행상황과 국가위기단계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의 대응방향을 지시함**
- **유래 없는 신종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무기한 휴원으로 인한 영유아의 어린이집 퇴소와 어린이집의 재정 악화, 긴급보육을 시행하는 보육교직원의 신체·정서적 건강 위협, 어린이집 휴원기간 부모의 육아부담 증가, 감염병 확산 단계에 따라 변경되는 대응지침으로 인한 부모-어린이집의 혼란 가능성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이후 주기적으로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이후의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장기적 준비가 필요함**
 - 감염병 대유행을 거치며 어린이집 폐업과 보육교사 실직 등으로 인한 보육서비스 기반의 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함
 - 긴급보육 참여 보육교직원의 신체·정서적 안전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전담 감염병 의료정보 제공 창구를 개설하며, 보육교직원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시행해야 함
 - 어린이집 휴원이 영유아의 놀이와 발달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시적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확산단계별 어린이집 관련 대응지침을 매뉴얼화하여 부모와 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대해야 함
 -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해 부모교육의 건강·안전 영역에서 감염병 관련내용을 강화하고, 아픈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목 차

1. 들어가며	1
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 현황	3
가. 어린이집 감염병 대응의 일반원칙	3
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5
3.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	8
가. 무기한 휴원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재정 악화	8
나. 긴급보육을 시행하는 보육교직원의 신체·정서적 건강 위협	8
다. 어린이집 휴원기간 부모의 육아부담 증가	9
라. 확산단계별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부모-어린이집의 혼란 가능성	9
4. 시사점 및 향후과제	10
가.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육서비스 기반 약화 방지	10
나.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10
다. 일시적 휴원에 따른 가정양육 지원	12
라. 감염병 확산단계별 부모-어린이집 대응 매뉴얼 마련	13
마.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14

1. 들어가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¹⁾ 사태로 정부가 위기경보 최고 심각단계를 선포하며, 전국적 휴교령과 사회적인 거리두기 등의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1월 19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는 2월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음.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 대학교의 휴교 조치,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확진자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외국에 머물던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들의 귀국 직후 확진 판정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재차 감소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 여전히 확진자 급증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함.
-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단계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요구되는 대응방식이 달라짐. 이러한 상황변화의 기준으로 국내외 위기경보 단계를 기준으로 한 어린이집에 필요한 대응방식의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음²⁾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 대유행시 국가위기 경보에 따라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의 4단계로 구분하며, WHO의 위기경보 단계와 달리 감염병 위험이 없는 단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위기 경보 발령 경과는 <표 1>과 같음.
-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유행 시 영유아의 단체보육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해짐
 -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관련 문제는 2003년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과 2009년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 등 신종감염병이 등장 때마다 반복되는 일임. 이외에도 어린이집은 수시로, 혹은 계절별로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노출위험이 높은 곳임.

1) 2020.02.11. WHO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VID-19로 정함. 2020.02.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하기로 함.

2)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표 1> 한국의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구분	위기유형	주요 대응 활동	시기	비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³ 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질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역량 정비 필요 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2019.12.31. - 2020.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원인미상 폐렴환자 44명 보고 태국, 일본 환자 발생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³ 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설치⁴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2020.01.20. - 2020.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첫 확진자 발생 WHO, COVID-19 명칭결정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³ 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설치⁴ 운영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2020.01.28. - 2020.0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확진자 4명으로 증가 WHO, 코로나19 위험수준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³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정부적 총력 대응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020.02.23.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3 당시 국내 확진자 602명, 전일대비 169명 증가

자료: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위기경보단계를 바탕으로 재구성

○ 영유아는 그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우며, 면역력이 약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에 의한 예방과 주의가 필요함

- 영아는 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발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고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음.³⁾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교구재를 공유하며 생활하므로 전염병 예방이 더욱 어려움.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다수 아이들이 감기, 수족구, 고열, 피부질환, 경기 등의 다양한 질환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음.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그렇지

3) 한현정, 채혜경 (2018). 어린이집 운영자가 겪는 환아 보육의 실태, 어려움과 요구. 교육혁신연구, 28(3), 465-488.

않은 영유아에 비해 감염성 질환을 더 많이 경험하며, 특히 장염, 중이염, 폐렴의 비율이 높고 재발률도 높으므로,⁵⁾ 영유아 대상의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임.

- 한국에서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pandemic, 대유행) 상태에 접어들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예방노력이 길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예상된다고 경고하였으며, 감염병 확산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침과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에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앞으로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 현황

가. 어린이집 감염병 대응의 일반원칙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단체보육 장소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염병의 위험성에 노출됨. 이 때문에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와 교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지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안전교육, 감염병 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⁶⁾
 -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 보육을 실시하는 때 해당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 정기적으로 영유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함⁷⁾. 또한,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⁸⁾에 따라 매

4) 김일욱, 박현정 (2012). 보육교사의 영아 건강관리 실태 및 교육 요구 조사.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99-120. / 이소정 (2009). 영아교사의 건강 안전에 대한 지식 정도 및 교육 요구와 관리 실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안중균, 최성열, 김동수, 김기환 (2012).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과 감염성 질환 실태연구. 대한소아감염학회지, 19(1), 19-27.

6) 보건복지부 (2020). 2020 보육사업안내.

7) 「영유아보육법」 제31~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8)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안전교육 기준)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

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결과를 보고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발생 또는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⁹⁾ 영유아의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며, 진단 결과 확진 혹은 의사증상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하도록 조치해야 함.¹⁰⁾

○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도 ‘건강·안전’ 영역에서 감염병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책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¹¹⁾

- ‘건강·안전’ 영역의 하위지표로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아프거나 다친 유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한다’, 등의 문항이 추가되었음.

○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에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작은 규모 어린이집에는 해당하지 않으며,¹²⁾ 원장과 보육교사가 본래의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영유아의 전반적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영유아 100인 미만의 작은 규모 어린이집은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으며, 해당 의무 시설에서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처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 안전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주어지게 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 시에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할 수 있음¹³⁾

-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이후, 전염성 질병을 포함한 긴급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한 국가적 휴원 명령이나 지자체장을 통한 지역적 휴원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하

위생관리 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

9)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아동학대, 사망사고 및 언론취재 사항 등 중요사항의 경우 시·도와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사고통계를 관리함

10) 가정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함 (이용문의: 1577-2514 또는 <http://idolbom.go.kr>)

11) 한국보육진흥원 (2020). 2020 어린이집 평가지표 (영역3) 건강·안전 분야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는 경우,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위에서 제시된 바처럼,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 등에서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 관리에 관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와 같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과 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과 진행 단계에 따른 부모와 어린이집의 대응지침에 대해 보다 명확한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1)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안내함¹⁴⁾
 - 어린이집에서는 손 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을 자제해야 함.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함.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회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함.¹⁵⁾
-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 시, 어린이집을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하되, 휴원 시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하고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을 관리함¹⁶⁾

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 경기도청 고시공고 (2020.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안내.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소독 요령 안내.

16) 안양시 고시공고 (2020.2.19.).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어린이집 휴원조치 및 긴급보육 지침 안내.

-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도,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¹⁷⁾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료나 담임교사 지원금, 대체교사 지원일수 등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시에 영유아와 보육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표 2> 참조)¹⁸⁾
- 기존 월 11일 이상 출석한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영유아가 코로나19 관련 이유로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 기존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교사 자가격리 등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함.
- 기존 국비나 도비를 사용한 대체교사 지원일수를 연간 최대 10일로 한정하던 규정을 조정하여, 코로나19 관련 병가 사용 교사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을 14일까지 확대함.

<표 2>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구분	기존	변경
보육료 지원기준	월 11일 이상 어린이집 출석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함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담임교사 지원비 지급기준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등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 평일 4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도 보육교사 근무일수에 포함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중국 방문 등으로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대체교사 지원기준	국비/도비를 통한 대체교사 최대 10일까지 지원함	코로나19 관련 병가를 사용하는 보육교사의 업무배제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을 14일까지 확대 지원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28.~2020.1.29.)를 바탕으로 재구성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사유 기준 안내.
 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담임교사지원비 등 지급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체교사 지원 기준 안내.

2) 코로나19 관련 긴급보육 시행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0년 2월 27일부터 시작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 영유아의 돌봄 공백을 없애고 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사전에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함.
 -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함. 또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를 지원하고 있음.¹⁹⁾
-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전에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내용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함.
 -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진자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와 그 이용가정(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음. 그리고 2020년 3월 31일, 정부차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무기한 휴원을 포함한 개학 최종연기안을 발표하면서 이후로도 긴급돌봄과 긴급보육, 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2.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3.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

가. 무기한 휴원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재정 악화

-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개학 무기한연기 발표 후, 부모들이 자녀의 어린이집 퇴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²⁰⁾ 이는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들이 추가적인 돌봄비용을 지출하거나 직장을 쉬고 직접 자녀를 돌보는 상황이 되어,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해졌기 때문임. 이로 인한 보육료 수입 감소는 어린이집의 재정상황 악화와 그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긴급보육을 시행하는 보육교직원의 신체·정서적 건강 위협

- 지자체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위생물품 지원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있어,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신체적 건강이 보장받지 못함
 -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맞벌이 가정 자녀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기간에도 정상적인 일과에 가까운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영유아의 단체보육환경에서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영유아와 교직원을 위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물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각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그리고 국공립, 직장, 민간 등 유형에 따라 물품 지원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예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유아를 보호하며 밀접접촉을 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임
 - 영유아에 대한 책임감과 부모로부터의 압박감을 동시에 받는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건강관리와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 의무로 인해 이중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됨.²¹⁾

20) 권슈머타임스 (2020.04.28.). 양천구,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 기호일보 (2020.04.22.) 코로나19 진정세 보여도 인천 어린이집 존폐 위기. / 경인일보 (2020.04.009.). 오산시,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어린이집에 긴급운영비 지원. / 주간동아 (2020.04.17.) 유치원 장기 휴원에 ‘퇴소 후 긴급보육’ 늘어.

21) 최예린 (2020). 코로나19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255-279.

다. 어린이집 휴원기간 부모의 육아부담 증가

- 발달적 특성 상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느린 영유아에게 긴급보육이나 긴급돌봄 같은 급격한 변화는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 부모의 육아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이 넘게 이어진 어린이집 휴원과 3월 31일 발표된 무기한 휴원으로 인해 부모들의 육아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음

라. 확산단계별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부모-어린이집의 혼란 가능성

- 유래 없는 신종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역시 확산상황에 따라 가능한 대응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임. 아직까지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대응방식을 구성하고 있지 못함. 등하원시 발열체크, 환경과 교구재 소독,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단축운영 및 일시 휴원, 긴급보육, 감염병 관련 아동의 출석인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급여 지원, 무기한 휴원 등의 여러 가지 대응책이 짧은 기간에 이어지면서 부모와 어린이집의 혼란이 늘어날 수 있음.
- 무기한 휴원으로 인해 퇴소한 영유아들이 재취원하게 될 때의 입소절차와 적응기간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됨. 어린이집의 경우 일시적 중단(휴학)이 아닌 퇴소절차를 밟게 되므로, 퇴소영유아는 기존의 어린이집, 혹은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새로이 입소절차를 거쳐야 함.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기존 어린이집을 퇴소하여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야 하는 영유아와 3월 입학예정이었던 영유아들이 모두 어린이집에 등원하게 될 것임. 각 부모의 사정에 따라 영유아마다 서로 다른 시기(5월~9월)에 적응기간을 거치면서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소모한 부모들의 경우, 적응기간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 사용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4. 시사점 및 향후과제

-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문가들은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당면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이후의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가.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육서비스 기반 약화 방지

“감염병 대유행 기간, 어린이집 폐업과 보육교사 실직 등으로 보육서비스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

-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육료 공백 보전과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어린이집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나 해고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보육서비스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휴원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으로 보육교직원의 직위와 급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퇴소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보전해줌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비 급감을 막고, 보육서비스의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²²⁾
 - 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음을 감안하여, 교재와 교구, 비품 구입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정해진 기금인 안심보육료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방안을 일시적으로 허가하였음. 이처럼 어린이집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보육료나 지원금의 부분적 전용을 허가함으로써 단기간의 예산부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나.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긴급보육에 참여하는 보육교직원의 신체·정서적 안전 보장과 소규모 어린이집

22)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0.4.20.). 서울시, ‘코로나19 운영난’ 어린이집 고용유지 위한 75억 긴급지원. / 기호일보 (2020.04.08.) 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긴급수혈. / 뉴스스 (2020.04.28.) 은평구, 코로나19로 운영난 어린이집 지원. / 중부매일 (2020.04.28.). 충북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한시 지원. / 울산저널 (2020.04.28.).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민간어린이집에 특별 지원.

방역 지원”

- 정부는 긴급보육에 참여하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물품 지원을 명시화하는 등 안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낮은 감염병 대응에서 오는 보육교직원들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등 예산규모가 작은 시설의 자체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구소독기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산규모가 작은 가정/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방역물품 대여와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노동부담을 낮추고 어린이집의 방역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유사한 사례로, 경기도는 2017년 7월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대여와 설치, 필터 구입 비용을 지원해왔음.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의 나트륨 섭취량 제한을 위해 주2회 염도측정 보고를 조건으로 디지털염도계를 무상대여해주고 있음.

“어린이집 전담 감염병 의료정보 제공 창구 개설 및 보육교직원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시행”

- 정부는 신종 감염병 예방과 대처에 관해 보육교직원들이 상시로 전문적 의료자문을 얻을 수 있는 온라인/유선창구를 개설하여 코로나 관련 대응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보건위생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감염병 대처를 비롯한 의료전문상담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집의 보건위생 관리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감염병 예방전문가의 어린이집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의 정보 전파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한 의료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음
 - 일반적인 대응책과 치료방법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 사례에 따른 대응과 상시예방이 중요하므로,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을 위한 감염병 예방전문가의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과 모범사례 전파 효과를 꾀할 수 있음. 또한, 기존에 배포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 일반적인 대

응지침 외에도 실제 발병사례나 코로나 관련 지원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관련지식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관련 대응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의 최전선에 있을 뿐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전달에 있어 결정적인 인플루언서²³⁾로 기능할 수 있음. 특히 부모들은 양육관련 정보에 있어 보육교직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맘 카페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과 예방법 등이 공유되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으므로,²⁴⁾ 보육교직원의 정보 전파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한 의료 정보를 확산시키고 부정확한 정보들을 차단할 수 있음.

다. 일시적 휴원에 따른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휴원이 영유아의 놀이와 발달에 미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 정부는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권고하고, 예외적인 상황임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지원을 시행해야 함
 -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가족구성원 양육을 위해 연간 90일의 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음.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진행기간 동안 융통성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 의심증상 등으로 인해 보육 아동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환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기 별도의 공간에서 환아보육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걱정을 줄일 수 있음
 - 컨디션이 좋지 않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동 간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증상에 따른 보호유형 세분화가 필요함.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환아, 병치레 후 아동 보육사업’ 도입하고, 이후 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환아 대응형, 병치레 후 아이 대응형,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 대응형, 비시설 방문형 의 네 가

23) 인플루언서(influencer) :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24) 뜨거운 물 마시기, 자외선 쬐기, 마늘, 미네랄소금, 카레가루 먹기 등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마스크 뒤집어쓰기, 전해수 뿌리기 등 논란이 있는 예방법이 온라인상에서 여과 없이 공유됨

지로 구분함.²⁵⁾ 아픈 아동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걱정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됨.

“어린이집 재원 중 일시적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지원 추진”

- 어린이집 휴원기간에 발생하는 긴급돌봄 비용과 부모의 양육부담은 자녀의 어린이집 퇴소 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어린이집 재원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가정양육에서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문놀이 프로그램 바우처를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평소 어린이집 등원 등으로 아이와의 접점이 적던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문화센터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에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교구재와 프로그램 동영상 등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렇게 누적된 놀이 프로그램을 DB화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상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장기적으로는 육아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 간의 소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관으로 방문놀이 프로그램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미퇴소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놀이지원 프로그램(바우처)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놀이활동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사전에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철저한 건강검진(보건증, 채용신체검사 등 시행)과 개인위생관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부모들에게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임.

라. 감염병 확산단계별 부모-어린이집 대응 매뉴얼 마련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응지침을 매뉴얼화하여 부모-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 확대”

- 정부는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전파한 대응방안을 토대로 감염병 확산단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응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어린이집 감염병 확산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해

25) 正長清志(2015). 病児・病後児保育の現状と課題に関する一考察.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3, 95-132. / 한현정, 채혜경 (2018). 어린이집 운영자가 겪는 환아 보육의 실태, 어려움과 요구. 교육혁신연구, 28(3), 465-488.에서 재인용

야 함. 예를 들어, 확산 초기의 대응(매일 등하원시 발열체크, 주 1회 환경과 교구재 소독 등)에서부터, 확산 진행시의 대응(유증상/의심증상 아동에 대한 등하원 기준 변경, 일 3회 주기적인 발열체크, 매일 교구재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그리고 심각 단계의 대응(어린이집 휴원, 감염병 관련 아동의 출석인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급여 지원 등)까지의 차별화된 대응을 매뉴얼화해야 함

- 정부는 감염병 진행상황이나 국가위기단계 등과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집 감염병 확산단계별 대응지침」을 교사와 부모에게 안내하여, 이후 감염병 대응에 대한 예상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 감염병의 유행기가 지난 후 영유아와 가족의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대한 대응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기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각단계 이후의 수습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과 교육부 관할 유치중고교의 휴교/휴원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부모들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음
 - 소관부처의 차이에 따라 초기 대응 시 휴원여부에 차이가 있어, 자녀의 소속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에 따라 부모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 이는 메르스 사태 때부터 제기된 문제로, 부처 간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²⁶⁾

마.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건강·안전 관련 부모교육의 감염병 대처를 위한 내용 강화”

- 영유아의 건강·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감염병 관련내용을 강화하며, 감염병 관련영유아의 등하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함

26) 김도읍 의원.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2.19.) (의안번호 02011991/2011992)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명령을 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여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 그간 부모교육에서 감염병은 선호되지 않는 주제였지만, 감염병 예방에 있어 가족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협조는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건강안전에 대한 부모교육에서 감염병 관련내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가벼운 증상이 있더라도 등원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하원시 발열체크 의무화와 의심증상 영유아에 대한 격리 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며, 등하원 기준 준수를 위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 가지 방법으로 감염병 확산단계별로 어린이집과 부모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상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가능여부에 대한 일관적 기준을 제공한다면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갈등을 줄이고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임. 동시에 지원책으로써 자녀의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어린이집에서의 보고가 긴급보육 서비스 신청으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동시스템을 제공한다면, 자녀의 감염병 증상 발현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